

정 관

주식회사 위키시큐리티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위키시큐리티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 서비스
1. 소프트웨어 개발
1. 정보 보안컨설팅
1. 스마트폰 보안 서비스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기술풍역업
1. 무역업
1. 정보처리기기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업
1.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업
1. 연구개발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1.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ikisecurity.net에 전자광고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자광고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 회사가 선택하여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과 주 권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

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주주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권면역의 주권으로도 발행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④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신주의 인수방법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⑤ 제④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자기주식의 취득)

-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광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 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재무 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면대하

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 11 조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 12 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제 10조 제 ④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이사회 결의 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하 "금전 등"이라 함)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 기간"이라 함)
6. 양도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는 양도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제 ③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 1항 제 2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하는 수에 제 3항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제 13 조 (자기주식 취득의 처분)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여 처분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상법 제383조 6항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사 임직원에게 상여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이 되며, 제 ①항에 따라 처분한다.

제 14 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 18 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0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같다.

제 2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개월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은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22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유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4 조 (소집 시기)

-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장권이 장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 25 조 (소집 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를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행어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청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한 주식의 종류에 따른 의결권 수에 따른다.

제 2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0 조 (의결권의 불동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동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동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약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
 - 2. 수권자본의 증가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방법,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 정리
 -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수
 -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 6. 자본의 감소
 -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설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④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3 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형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4 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할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 ① 상법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② 상법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대표이사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 39 조 (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한대행)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제 ②항에 이사들의 직급이 동등한 경우 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이 더 오래된 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 ②, ③항에 이사들의 직급이 동등하고 이사로서 근무한 기간 역시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본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 x 근무연수 x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재임 중 사망한 이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일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통신에 송, 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상당액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당액 또는 고문 약간 양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45 조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감사의 기능을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담당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47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법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본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 x 근무연수 x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재임 중 사망한 감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0 조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1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영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감사는 회일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사에 5년간, 지령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 (외부감사인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인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 이익이익잉여금

제 5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①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증책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이익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에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들 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5 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영업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여,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⑥ 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에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들 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56 조의 2 (소멸시효 완성 배당금 특별 결의)

- ① 회사는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익배당금에 대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③ 본 조항은 정관 개정 이전과 이후 모두 적용되며, 개정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재무적 부

단 감감을 위해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주주총회는 이익배당금 지급의 방식, 시기, 비율 등을 결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⑥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제 57 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 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58 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 연도의 시점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별첨: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별첨: 임원 유족 보상금 지급 규정

2025년 03월 31일

주식회사 위키시큐리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21, 1910호(가산동, 메이스가산타워)

대표이사 홍 진 기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해 당사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감사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미등기 실무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 3 조 (적용 범위)

- ① 임원의 퇴직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연봉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며, 해당 계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 및 상여금과 보수 한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보수의 구성 및 대상 기간)

- ① 임원의 보수는 [월 급여 +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 ② 임원 보수의 대상 기간은 매년 04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 보수의 결의)

임원의 보수는 매년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되며, 확정된 내용은 '임원 보수 계약서'에 기재한다. 다만, 대상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그 내용을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임원 보수 계약서를 수정한다.

제 6 조 (월 급여의 종류)

- ① 월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급과 수당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는 '임원 보수 계약서'에 의한다.

제 7 조 (상여금의 종류)

상여금은 [정기 상여 +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정기 상여)

- ① 정기 상여는 영장 상여, 휴가 상여, 연말 상여 등을 의미하며, 개별 임원의 월 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연 2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 상여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는 '임원 보수 계약서'에 의한다.
- ③ 연봉제를 적용 받는 임원에게 본 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 ①항의 '월 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총액의 1/12'으로 하며, 제 ②항의 '임원 보수 계약서'는 '임원 연봉 계약서'로 한다.

제 9 조 (성과급)

- ① 회사는 임원들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정기 상여와는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성과급은 사후적이고 변동적이므로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는 '임원 보수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10 조 (지급 방법)

이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 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지급 시기)

보수는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은 보수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 시기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한도)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임원들에 대한 보수의 연간 총합계(제9조의 성과급 및 별도 계약에 의한 연봉을 포함)는 정관 제40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어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및 제49조 2항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써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감사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미등기 실무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 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

제 3 조 (지급조건)

- ① 이 규정의 퇴직금은 본 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 등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범위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나오는 '현실적 퇴직' (종간 정산 관련 규정 포함) 및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퇴직금의 계산)

- ①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 계산기준

$$\begin{aligned}
 & \text{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기산일} \\
 & \text{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
 & \text{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times \frac{1}{10} \times \frac{\text{기산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
 & \text{까지의 근무기간}}{12} \times A \\
 & \text{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 + \\
 &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
 & \text{(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
 & \text{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
 & \text{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20년 1월 1일 이후의} \\
 & \text{근무기간}}{12} \times B \\
 & \text{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end{aligned}$$

2. 위 1호에서 지급 배수 A와 B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 시 직위에 따른 지급 배수를 근무기간 전체

에 적용한다.

직 위	지급률A	지급률B
대표이사	3배	2배
이사	3배	2배
감사	3배	2배

- ② 제1항 적용 시 총 급여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하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 및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③ 제1항 적용 시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 5 조 (근무기간의 계산)

- ①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재직 한 기간에 한한다.
- ②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제 6 조 (퇴직금의 지급 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에 의한다.

제 7 조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및 유족보상금)

- ①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퇴직금 외에 유족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유족보상금은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제4조에 의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 8 조 (규정의 폐기)

이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하므로 규정의 폐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서 만 가능함을 확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임원 유족 보상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3항 및 제49조 제3항에 의해 당사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동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와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감사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미등기 실무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 3 조 (적용 범위)

- ①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경영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 2 장 유 족 보 상 금

제 4 조 (지급사유)

임원 유족보상금은 채임 중에 사망한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

- ① 유족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보상금	장의비
순직한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	평균임금의 120일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외의 경우		

- ② 유족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 6 조 (유족보상금 지급 방법)

임원 유족보상금은 금전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 시에 병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을 준용한다.

제 7 조 (유족보상금 지급 시기)

임원 유족보상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회사와 유족의 합의하에 그 시기를 연장할 수는 있다.

제 8 조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범위/순위)

① 임원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임원이 사망할 당시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순위로 수급권자가 된다.

1. 사망한 임원의 직계비속
2. 사망한 임원의 직계존속
3. 사망한 임원의 형제자매
4. 회사

② 제1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수급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공동 수급권자가 된다.

③ 사망한 임원의 배우자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와 동순위 공동 수급권자가 되고 그 수급권자가 없는 때에는 단독 수급권자가 된다.

제 9 조 (유족보상금 수급권자격자의 자격상실과 대습)

① 제8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될 유족이 임원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에 의한 결격자가 된 경우 유족보상금의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수급권자가 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 자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 자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수급권자가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수급권자가 된다.

제 10 조 (임원 유족보상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 임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1명을 유족보상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써 규정의 폐지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